

수원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15914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변 론 종 결 2021. 6. 23.  
판 결 선 고 2021.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B1) 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0.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2,479,45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623,493원을

593,102,945원으로 각 경정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 제2번 보증약정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순번 | 보증번호 | 보증금액(원)     | 보증일          | 보증기한         |
|----|------|-------------|--------------|--------------|
| 1  | F    | 180,000,000 | 2014. 2. 26  | 2022. 2. 25  |
| 2  | G    | 810,000,000 | 2015. 11. 24 | 2016. 11. 24 |

2) E은 2015. 11. 25. 제2보증서를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고 9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20. 2. 21. 원금연체를 이유로 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3. 25. H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815,231,80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채무자인 E 및 연대보증인인 B은 원고에 대하여 같은 날 합계 824,213,482원(= 대위변제금 815,231,802원 + 대지급금 7,561,410원 + 추가보증료 1,420,270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나. E, B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

- 1) E은 2015. 10. 30.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이자율 연 3%, 지연손해금률 연 10%, 기간 2016. 10. 29.까지로 하여 차용하였고,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2) B은 2019. 5. 30.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5. 30. 접수 제73753호로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3) 피고는 E 또는 B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2.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 진행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873,058,329원 중 522,479,452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0,623,493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20. 10. 28.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해 이의하였다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E과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H은행에 대위변제한 보증금 및 대지급금, 추가보증료 합계 824,213,48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청구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 나. 채권자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와 E 사이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었고 B이 E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E이 H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보증사고일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9. 5. 30. 체결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E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보증사고를 발생시킬 정도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E은 보증사고 발생 전월인 2020. 1. 24.까지 발생한 대출금 이자를 H은행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최초 보증기한은 2016. 11. 24.까지였으나, 원고는 E 또는 B의 채무나 신용상태에 대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보증사고 발생시점인 2020. 2. 21.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계속 연장해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E의 재무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위 회사가 융통어음을 발행하기도 하였지만, 당시 E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소재한 I와 투자 유치 협의를 진행하며 투자확약과 관련된 문서를 받았고 2019. 9. 1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재무상태나 신용상태가 나빴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자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김동석, 판사 이은경

## [별지]

##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용인시 수지구 J, K, L

[도로명주소] 용인시 수지구 M

N아파트 O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10층 아파트

1층 954.2262㎡

2층 919.9542㎡

3층 919.9542㎡

4층 919.9542㎡

5층 919.9542㎡

6층 919.9542㎡

7층 919.9542㎡

8층 919.9542㎡

9층 919.9542㎡

10층 919.9542㎡

지1층 963.571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용인시 수지구 K 대 29623.7㎡

2. 용인시 수지구 L 대 44059.6㎡

3. 용인시 수지구 J 대 54492.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P호 철근콘크리트조 128.2078㎡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128176.2분의 83.2862. 끝.

1) 2020.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1항 기재 'D'은 'B'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원고는 당초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소송계속 중 위와 같이 경매절차가 진행되며 배당이 되자 배당이익을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으로 원상회복에 관한 청구취지를 배당이의 청구로 변경하였다.